

## Ⅲ.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

### 1. 사업개요

-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

### 2. 신청자격

-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-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(건설현장 제외,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)
 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'소기업 규모 기준'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    - ※ 중소기업 확인서[첨부1]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  -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'중소기업 규모 기준'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    - ※ 중소기업 확인서[첨부1]를 발급받아 제출하고,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

### 3. 참여제한

-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참여 제한

**<참여 제한 사유>**

- ▶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
- ▶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- ▶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
- ▶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·기구·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한다)
- ▶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
- ▶ 당해연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외 안전일터 조성지원, 건강일터 조성지원, 안전동행 지원사업,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결정 사업장
- ▶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·기구·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자·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

## 4. 지원내용

- (지원방식) 품목별 상시 신청·접수 및 공모로 추진

|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 |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
| ①지정품목(35종)  | ②관리품목(2종)  | ③자율신청품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상 시         | 공 모        | 공 모   |
| 연 중         | 4월 또는 5월 중 | ① 1차 : '26.1.2~3.31.(3개월)<br>② 2차 : 7월 중(1개월) |

※ 공고 일정 및 시행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**<참고>**

- ① **지정품목** : 사고사망 감축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품목이 지정되어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로 연중 상시 지원
  - 특정 품목 신청과 결정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, 공고를 통해 해당 품목의 신청을 중단하고, '27년 이후 관리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
- ② **관리품목** : 사업의 자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으로 별도 기간을 정하여 공고·지원
  -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, 인공지능(AI)기반 인체감지시스템(고정식)
- ③ **자율신청품목** : 지정·관리품목 외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안전 시설·장비를 신청하는 품목으로 별도 기간을 정하여 공고·지원
  - 자율신청품목 1차 예산 배정액은 전체 예산의 20%내외로 운영하고 2차 예산은 추후 결정 예정

- (지원한도)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까지
  - 기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,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
  - ①고용증가 사업장(1명당 200만원 범위,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한함), ②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, ③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, ④고위험업종(6개업종)\*은 각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

\* 50인 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소업종 중 사고사망자수 상위 6개 업종  
 - ①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(21809), ②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(21831), ③기타 섬유제품제조업(20209), ④자동차부분품제조업(21846), ⑤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(21856), ⑥화학비료제조업(20903)

- (지원횟수) 당해연도 2회에 한함
- (지원조건)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% 지원(부가세 미지원)
- (지원품목) 지정·관리품목 37종 + 자율신청품목
  - 품목별 세부설명,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은 세부내용 참조[첨부2]

| 구 분          | 취급품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|
| 안 전<br>(30종) | 인공지능(AI)기반 인체감지시스템(2종) ※ 고정식 : 관리품목       |
|              |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(2종)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인공지능(AI)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, 옵션: 흔들림 방지장치(2종) |
|              |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(4종)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시스템(7종)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(3종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 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붕괴·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 건<br>(7종)  |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※ 관리품목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근력보조슈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(2종)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 율          |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2종(방진마스크, 귀마개)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자율신청품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[첨부2] 최소성능기준 및 지급기준 미충족시 지원 불가(반드시 해당 품목별 기준 확인)

- (지원절차) 일선기관별 예산범위 내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추진
  - 필요 시,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[첨부3]



## 5. 신청기간 및 방법

- (지원예산) 370억원
- (신청기간) '26. 1. 2.(금) ~ 일선기관별 채용 소진 시까지
- (신청방법)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·접수
  - 산업안전포털([portal.kosha.or.kr](http://portal.kosha.or.kr))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(오프라인 신청불가)
    - ☞ 온라인 신청 메뉴얼: [portal.kosha.or.kr](http://portal.kosha.or.kr) > 지원사업 신청 > 안전일터조성지원 (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) > 자료실
    - ※ **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**
    - ※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,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
- (제출서류)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
  - ※ 온라인 신청 시「참여사업장 이용 동의」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**사업주명**으로 서명하고, **대표자(담당자) 휴대전화 번호**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
  - ※ 품목별 최소 성능기준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품의 제조·수입·판매·사용 등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 인증/검사 등의 증명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

| 구 분   | 비고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|
| 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|                |
| ② 상품설명서(카탈로그, 설명서) 등 : 제품명, 외관사진, 사양, 규격, 기능, 도면 등<br>※ 세부 구성, 구성품 모델, 수량 등이 명시된 자료 포함(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)<br>※ 품목별 최소성능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|                |
| ③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(품목별 「보조금 지급기준」에서 정하는 기준)   | 해당시            |
|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   |                |
| ⑤ 사업장 전경 및 품목별 지원품목 설치대상 작업 증빙사진(투자계획)  | (첨부4)          |
| ⑥ 사업자등록증,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등록원부,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<br>- 이동식크레인,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,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, 차량계 건설기계·하역운반기계 등  | 해당시            |
| ⑦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) ※ 50인 이상인 경우   | (첨부1)          |
| ⑧ 중소기업 확인서(중기업, 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),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<br>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<br>※ 50인 이상,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| (첨부1)          |
| ⑨ 추가지원 증빙자료(강소기업, 근로자수, 위험성평가 인정)   | 해당시            |
| ⑩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 | (첨부4)          |
| ⑪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(투자계획용)<br>※ 제작·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·판매업체와 일치   | (첨부4)          |
| ⑫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,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 등 투자계획 확인*을 위한 자료<br>* 품목별 최소성능기준, 지급기준에서 제시한 자료 등<br>※ 고정 설치의 경우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(도면 등) 반드시 포함(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)   | 해당시<br>(첨부4)   |
| ⑬ 법적 의무 인증/검사 등의 증명서류 사본  | 해당시            |
| ⑭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 | 자율신청<br>품목에 한함 |
| ⑮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 | 자율신청<br>품목에 한함 |
| ⑯ 신기술 적용 관련 증빙서류(시험성적서, 인증서 사본 등)   | 자율신청<br>품목에 한함 |
| ⑰ 보조·용자금 중복지원 금지 약속서  | (첨부4)          |

<참고>

- ③은 **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(5건 이상)**를 말하며, 제출 대상 여부는 [첨부 2] 품목별 보조금 지급기준 참조
  - <sup>1</sup>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**XML 파일**[첨부7], <sup>2</sup>전자세금계산서 **PDF 파일**, <sup>3</sup>**거래사실 확인서**[첨부8]를 모두 제출
- ④는 「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> 증명서발급」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
  -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
  -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, 고용(산재)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
- 자율신청품목 신청시 제출하는 ⑮ 도입계획서, ⑩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에 기재한 위험 요인과 개선대책 등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시 중요하게 활용됨

### <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(전자세금계산서) 확인 강화>

- 1) 전자세금계산서에는 '모델명'과 '공급가액'이 단독으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함  
예) 'XXX 외 3건', '물품대금'과 같이 불분명한 자료는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
- 2) 안전보건공단 보조금이 지원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
- 3) 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(보조, 용자)에 참여한 판매업체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
- 4)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공급받는 자로 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
※ 2) ~ 4) 데이터는 안전보건공단 전산을 통해 직권 확인하며,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 
※ 실거래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상 사업장을 방문·유선 조사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거래내용에 대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
- 5) 1) ~ 4)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공단이 별도 시장가 조사나 지원 이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금액을 적용하여 결정·지급할 수 있음  
※ 시장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지급 방지를 위해 조사 완료 시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

## 6. 보조금 지급조건

-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투자계획과 동일하게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·설치 등 유해·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,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
  - ※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,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
- (투자완료기간)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**4개월 이내**
  - ※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,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
- (확인요청)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·설치 등 완료 후, 다음의 서류를 **온라인**을 통해 제출하여, 공단의 확인을 요청
  - ※ 원활한 투자완료 확인을 위해, 이동이 가능한 보조금 지급 장비는 공단에서 요청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

| 구 분   | 비고       |
|---|----------|
| ①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   |          |
| ② 전자세금계산서(청구용) 사본 각 1부  |          |
| ③ 설비 구매·설치 계약서 사본 각 1부<br>- 온라인 구매 시 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구매내역<br>(포함내용: 모델명,수량,금액,결제방법) |          |
|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   |          |
| ⑤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1부(보조금 지급 위임금액 제외)  |          |
| ⑥ 보조금지급 위임장 1부  | 해당시      |
| ⑦ 지급보증보험증권  | (첨부5)    |
| ⑧ 하자보증보험증권(구매(제작·판매)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)  | 해당시(첨부6) |
| ⑨ 품목별 안전인증, 안전검사 등 인증·검사 관련 서류<br>※ 크레인 주요구조부 변경에 따라 안전인증 시 소요비용 증빙 서류 제출           | 해당시      |
| ⑩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 | (첨부4)    |
| ⑪ 품목별「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」  | (첨부4)    |
| ⑫ 「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표」   | (첨부4)    |
| ⑬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(투자완료용)<br>※ 제작·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·판매업체와 일치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| (첨부4)    |
| ⑭ 품목별 추가요구 서류(AI 카메라 설치 서약서 등)  | 해당시(첨부4) |

<참고>

- ④는 「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> 증명서발급」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
-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
-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, 고용(산재)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
- ⑦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(보조결정금액 이상) 제출[첨부5 참조]
- ⑧의 「하자보증보험증권」은 제작·판매업체가 보조금 지급사업장에 제공하고, 보조금 지급사업장은 공단에 사본을 제출

### <입금 증빙서류>

#### (오프라인 구매시)

- ① (계좌이체) **이체확인증\* + 전자세금계산서 +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 통장 사본 각 1부**(원본대조필)

\*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입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지급금액 등 포함

#### (온라인 구매시)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

- ① (계좌이체) **이체확인증 +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**(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(국세청 홈택스)) + **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**(원본대조필)

\*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입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지급금액 등 포함

- ② (카드결제) **신용카드매출전표 + 신용카드복사본\***

- (사용가능카드) 법인카드(법인)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(개인사업자)
- (신용카드복사본)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
- (신용카드매출전표)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

## 7. 선금급

- 사업주의 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고, 해당 사업의 신속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·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선금 지원 운영

-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, 선금급 신청양식\*과 지급보증보험 증권\*\*을 제출한 경우, 보조결정금액의 80% 이내에서 지급 가능

\* 온라인 신청 시 선금급 신청 여부에 사전 체크한 경우는 생략 가능

\*\* 선금급 신청시 지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[첨부5] 참고

## 8. 부정당 행위 등 취소·환수, 참여제한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,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,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(최대 5배)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

**<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취소·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>**

| 취소·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  | 추가 환수 | 참여제한 |
|---|-------|------|
| ▶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·지원을 받은 경우   | 5배    | 5년   |
| ▶ 보조·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 | -     | 3년   |
| ▶ 보조·지원 대상을 임의매각·훼손·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| 2배    | 3년   |
| ▶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 | 2배    | 3년   |
| ▶ 보조·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·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| 2배    | 3년   |
| ▶ 보조·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| -     | 3년   |

-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「3. 참여제한」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며, 지급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음

## 9. 기타사항

- (문의처) 대표번호(1544-3088)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
☞ 산업안전포털(portal.kosha.or.kr) > 고객센터 > 관할소개 > 지역별 문의처 참고
- (사후관리)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
  -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
  - 사후관리기간(3년)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,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
- (사용성 강화) 제작·판매업체는 스마트 안전장비 기능, 사용방법, A/S 조치사항 등을 구매 사업장이 알 수 있도록 적극 교육·안내 하여야 하며, 구매 사업장은 해당 장비를 지속 유지·관리·사용하여야 함
  - ※ 투자완료 시 「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표」 작성 및 제출
- (품질보증) 사후관리기간 동안 A/S가 유지토록 지원품목은 품질 보증기간\*(3년) 의무가 확보되어야 함

\* 1년 무상, 2년 유상(제품의 본질적 문제는 제작·판매업체 부담 조건)

- (명판부착) 기본적인 제반정보\*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기재하여 부착
  - \* 필수정보: 제품명(모델명포함), 일련번호, 제조년월, 제작업체명, 판매업체명(연락처)
- ※ 스티커, 종이 및 그 밖에 쉽게 파손·변형·지워지는 재질(방법)로의 부착은 불가하며,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
  - ☞ 일부 소형이거나 소액 제품(스마트 귀마개 등)의 경우, 효용성 및 편의성,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
- (안전검사)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\*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부착·설치하는 경우 관련 위험 기계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
  - \* 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, 리프트, 압력용기, 곤돌라, 국소배기장치, 원심기, 롤러기, 사출성형기, 고소작업대, 컨베이어, 산업용 로봇, 혼합기, 파쇄기 또는 분쇄기
- (지원제외) 안전동행 지원사업(舊 안전투자 혁신사업)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에 설치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(관련법령·규정)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(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·지원)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(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),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-69호),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(공단규칙 제1145호)을 따름

■ 개요

-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)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,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에 포함 (다만,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일 경우 중기업도 지원대상)

Q. 중소기업이란?

중소기업은 ①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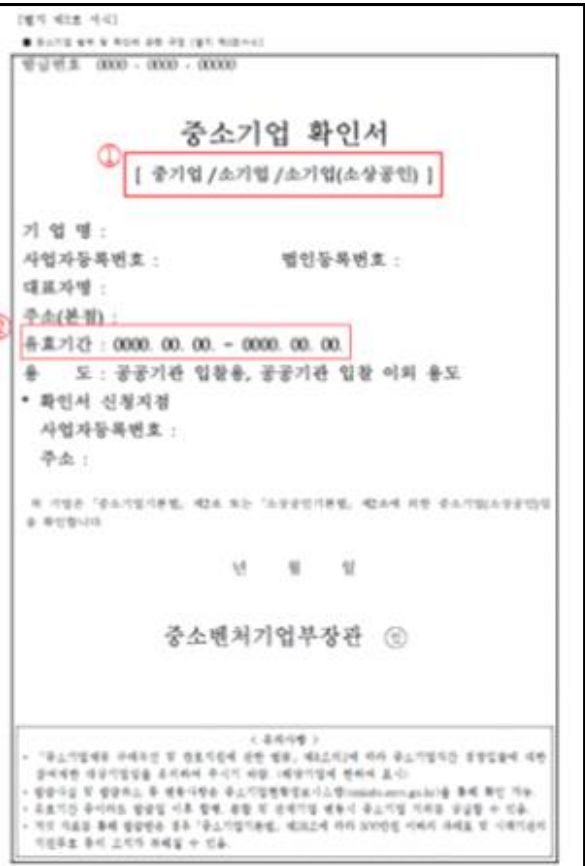
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 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 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 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.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.

■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



-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[sminfo.mss.go.kr](http://sminfo.mss.go.kr))에 접속하여 발급 신청(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)
- ☎ 문의
  - 일반상담(중소기업 통합콜센터) : 국번없이 1357
  - 온라인자료 제출, 중소기업 현황 : 02-3215-2674



■ 확인사항

- ① 신청사업장이 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에 한하여 지원(중기업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)
- ② 유효기간 :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
  - ※ 유효기간 산정기준 : 1년(+3개월)
    -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,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
    - 다만, 직전(또는 당해)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

- 품목별 최소성능기준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품의 제조·수입·판매·사용 등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 인증/검사 등의 증명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
  - KC전파인증\*이 최소성능기준에 있더라도 전파법에 따른 면제 대상이면 제외
- \*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

1. 인공지능(AI)기반 인체감지시스템(이동식)



- (지원목적) 위험구역 내 접근 시 실시간 감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“인공지능(AI)기반 인체감지시스템” 을 설치하여 끼임·충돌 및 그 밖에 위험상황(화재 등)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
- (품목설명) 인공지능(AI)기반 모델 및 이동통신기술이 적용된 카메라를 통해 근로자가 상시 이동하는 작업(건설)현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행동·상황 등을 인지하여 모니터링 및 경보를 해주는 장비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인공지능(AI)기반 인체감지시스템 (이동식) | 1. 건설업 본사에 지원<br>- 건설업본사는 건설업 등록증 사본, 및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도급·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제출<br>2. 일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,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 「인공지능(AI)관련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서약서」 제출<br>3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 |

| 구 성  | 최소 성능기준  |
|--|--|
| 통합제어장치 (AI영상처리장치, 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 및 모니터, 그 밖에 장치 등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 구성(통합제어장치)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</li> <li>1.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유무·추락과 옵션(선택시)*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경보 및 상황 전파 조치</li> <li>* 쓰러짐, 화재 감지 등</li> <li>2. 분진, 온도,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제작, 사무실 설치</li> <li>3. 모니터 등으로 실시간 상황을 화면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</li> <li>4. 인공지능(AI) 기능·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</li> <li>※ 한국인정기구(KOLAS) 또는 국제인정협력체(ILAC, APLAC)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(소프트웨어 분야에 한함) 또는 인증서로 성능목표, 학습/테스트데이터, 사용 알고리즘, 사용 언어, 개발프레임워크 등 AI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</li> <li>※ 단, 지능형 CCTV인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에서 발행한 '지능형 CCTV 인증서' 제출 가능</li> <li>5.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/ul> |

|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|---|
| <p>카메라</p>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종류 :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</li> <li>2. IP55이상</li> <li>3. 카메라는 무선통신을 통해 AI영상처리장치(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)와 상호 연결될 것.</li> <li>4. 전파인증(KC)을 받은 제품</li> <li>5. 배터리는 1회 충전 시 48시간 이상 작동하고, 별도의 충전 기구를 통해 외부충전 가능<br/>         ※ 배터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KC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제출</li> <li>6. 카메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</li> </ol> |
| <p>경보장치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작업장 소음에서도 위험 경고 등을 시각·청각적으로 바로 인지</li> <li>○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/ul>   |
| <p>기타</p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스마트폰 등을 통해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 상황시 알림 기능이 있을 것</li> </ul>  |

## 2-1.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(ILO형)



- (지원목적) 작업 중 끼임·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“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”을 설치하여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
- (품목설명) 고위험 기계설비에 센서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근 및 행동에 따라 설비의 전원차단 및 정지하는 시스템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(ILO형) | 1. (신청 시) 고위험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<br>- (기계설비 자체 구매비용 미지원)신규 설치인 경우, 해당 고위험 기계설비 구매 계약서 사본 제출<br>- I-L-O 구성 모두 설치되지 않은 설비에 한해 원칙적으로 지원하지도, 안전입력기기(I)만 기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<br>2. 고위험 기계설비가 안전인증·검사대상인 경우, 기 검사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인증·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<br>3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 |

○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 성   | 최소 성능기준  |
|---|--|
| 비상정지장치, 도어잠금장치, 안전제어기기, safety릴레이, 그 밖에 옵션·부속장치 등 | 1. 아래와 같이 입력처리 출력기능(I-L-O)을 갖출 것<br>- 안전입력기기(I) : 비상정지 및 도어잠금장치(락, 스위치 등) 설치<br>- 안전제어기기(L) : 안전컨트롤러 또는 안전PLC 등 설치<br>- 안전출력기기(O) : safety릴레이 등 설치<br>2.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의 구성품이 안전인증·검사대상인 경우, 설치기준은 안전인증·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서 제출<br>3.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 따른 방호울이 설치되거나 밀폐형 구조일 것<br>4. 설치된 설비에 접근하면 설비가 설정 단계에 따라 감지 및 정지<br>5. 고위험 기계설비 안전에 관한 기능 추가(옵션*) 가능<br>* 라이트 커튼, 레이저스캐너, 방호울, 안전매트 등<br>※ KCs인증 대상은 반드시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|
| 경보장치  | ○ 위험,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, 부저(경보음) 필수<br>○ KC전파인증서 제출   |

## 2-2.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(인공지능형)



- (지원목적) 작업 중 끼임·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“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”을 설치하여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
- (품목설명) 고위험 기계설비에 센서 및 인공지능(AI)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근 및 행동에 따라 설비의 전원차단 및 정지하는 시스템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(인공지능형)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신청 시) 고위험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규 설치인 경우, 해당 고위험 기계설비 구매 계약서 사본 제출(기계설비 자체 구매비용 미지원)</li> <li>※ 비상정지 및 도어잠금장치(락, 스위치 등) 등 기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</li> </ul> </li> <li>2.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 따른 방호울이 설치되거나 밀폐형 구조일 것</li> <li>3. 고위험 기계설비가 안전인증·검사대상인 경우, 既검사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인증·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</li> <li>4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</li> </ol> |

○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성  | 최소 성능기준   |
|---|---|
| 카메라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종류 :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</li> <li>2. 방수방진등급 : IP55 이상</li> <li>3.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li>4. 카메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</li> </ol>   |
| 통합제어장치 (AI영상처리장치, 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 및 그 밖에 장치 등)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끼임부딪힘과 추가 옵션(선택시)*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경보 및 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쓰러짐, 화재 감지 등</li> <li>- 도어 또는 방호덮개 등이 닫혀 있어 기계가 정상 가동하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끼임·부딪힘 등의 위험구역에 들어오는 경우, 고위험 기계설비가 즉시 정지</li> </ul> </li> <li>2. 분진유입, 온도,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또는 사무실 설치</li> <li>3. 인공지능(AI) 기능·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한국인정기구(KOLAS) 또는 국제인정협력체(ILAC, APLAC)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(소프트웨어 분야에 한함) 또는 인증서로 성능목표, 학습/테스트데이터, 사용 알고리즘, 사용 언어, 개발프레임워크 등 AI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</li> <li>※ 단, 지능형 CCTV인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에서 발행한 '지능형 CCTV 인증서' 제출 가능</li> </ul> </li> <li>4.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구성품이 안전인증·검사대상인 경우, 설치기준은 안전인증·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서 제출</li> <li>5. 고위험 기계설비 안전에 관한 기능 추가(옵션*)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라이트 커튼, 레이저스캐너, 방호울, 안전매트 등</li> <li>※ KCs인증 대상은 반드시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</li> </ul> </li> <li>6.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/ol> |
| 감지영역설정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카메라가 감지하는 위험구역 변경 가능</li> </ol>   |
| 경보장치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험,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, 부저(경보음) 필수</li> <li>2.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/ol>  |

### 3.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



- (지원목적) 기계설비 등에 “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” 를 설치하여 끼임·부딪힘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
- (품목설명) 이동형 위험설비에 센서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 등 충돌위험시 서행·정지하는 시스템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이동형 위험설비<br>스마트<br>접근경보장치 | 1. (신청 시) 무인운반차 등 이동형 위험설비를 보유(또는 신규 구매) 및 사용하는 사업장<br>2. 고위험 기계설비가 안전인증·검사대상인 경우, 既검사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 인증·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<br>3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 |

○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 성  | 최소 성능기준  |
|--|--|
| 비상정지장치,<br>레이저스캐너,<br>안전제어기기,<br>safety릴레이,<br>그 밖에 장치 등 | 1. 아래와 같이 입력처리 출력기능(I-L-O)을 갖출 것<br>- 안전입력기기(I) : 레이저 스캐너 및 비상정지장치 등 설치<br>- 안전제어기기(L) : 안전컨트롤러 또는 안전PLC 등 설치<br>- 안전출력기기(O) : safety릴레이 등 설치<br>2.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의 구성품 등이 안전인증·검사대상인 경우, 설치기준은 안전인증·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서 제출<br>3. 근로자가 위험 영역에 접근 시 단계에 따라 정지해야함 |
| 경보장치   | 1. 위험,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, 부저(경보음) 필수<br>2. KC전파인증서 제출   |

※ 입력처리 출력기능(I-L-O) 지원판단기준 : I-L-O 구성 모두 설치되지 않은 설비에 한해 원칙적으로 지원 하되, 안전입력기기(I)만 기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

#### 4.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(비접촉 과상승방지장치)



- (지원목적) 고소작업대에 “비접촉식 과상승방지장치” 를 설치하여 끼임·부딪힘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
- (품목설명) 고소작업대와 천장 사이에 거리(높이)를 센서로 측정하여 위험 높이인 경우, 자동정지하는 장치

| 품목명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 |
|----------------|--|
|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| 1. (신청 시) 고소작업대(안전인증품)를 보유(신규구매포함)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<br>2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 |

○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 성         | 최소 성능기준  |
|-------------|--|
| 비접촉 과상승방지장치 | 1. KC전파인증서 제출<br>2. 감지방식: 비접촉식(전파, 레이저 이상의 성능)<br>3. 비접촉 과상승방지장치를 고소작업대 개당 최소 4개 이상을 탈착이 불가하도록 고정하여 설치할 것<br>4. 방수방진등급: IP55 이상<br>5. 상부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상부 사이 간격 최소 0.6m에서 정지할 것. |

## 5. 인공지능(AI)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(옵션 : 흔들림 방지장치)



- (지원목적) 크레인에 “인공지능(AI)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및 흔들림 방지장치” 를 설치하여 끼임부딪힘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
- (품목설명) 크레인에 인공지능(AI)기반 모델과 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위험구역에 근접하는 경우, 차례로 경고 및 정지하는 시스템
  - 옵션 : 크레인이 물건을 인양·이동시 발생하는 흔들림을 제거하여 물건의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인공지능(AI)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| 1. (신청 시) 크레인을 보유(신규설치포함) 및 사용하는 사업장<br>2.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 주요 구조부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고 적합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.<br>- 안전인증을 다시 받은 경우, 제품심사 비용 및 부대비용(설계도면 작성, 하중시험 등) 일부 지원 가능<br>※ 단, 안전인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(증빙자료)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<br>3. 일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,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 「인공지능(AI)관련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서약서」 제출<br>4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 |
| 흔들림 방지장치 (옵션)       | 1. 크레인을 보유(신규설치포함) 및 사용하는 사업장<br>2. 출발·정지, 이동·정지 직후 흔들림이 거의 없어야 할 것.<br>3.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 주요 구조부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고 적합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.<br>4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<br>5. 사후기술지도 대상 품목   |

○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 성   | 최소 성능기준   |
|---|---|
| 카메라   | 1. 종류 : 일반카메라(열화상 카메라 설치 가능)<br>2. 방수방진등급 : IP55 이상<br>3. KC전파인증서 제출<br>4.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   |
| 통합제어장치 (AI영상분석서버, 무선통신기, 컴퓨터 및 그 밖에 부속장치 등) | ■ 해당 구성(통합제어장치)이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<br>1. 인공지능(AI) 기능·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<br>※ 한국인정기구(KOLAS) 또는 국제인정협력체(ILAC, APLAQ)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 성적서(소프트웨어 분야에 한함) 또는 인증서로 성능목표, 학습/테스트데이터, 사용 알고리즘, 사용 언어, 개발프레임워크 등 AI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<br>※ 단, 지능형 CCTV인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에서 발행한 '지능형 CCTV 인증서' 제출 가능<br>2. KC인증(전파인증)<br>3. 시스템 탑재하여 모니터링 화면이 끊기지 않고, 성능을 안정적으로 적정하게 유지<br>4. 분진유입, 온도,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 제작, 사무실 설치 등 조치<br>5. 설치·운전환경에 따라 구역 및 단계별 작업자를 감지하고, 경고·정지 기능을 탑재할 것<br>- 설치 후, 화물 권상·권하 시 매달린 화물 밑에 작업자가 있는 경우, 권상·권하동작 정지 |
| 고보라이트 (바닥조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방수방진등급 : IP55 이상<br>○ KC전파인증서 제출  |
| 경보장치  | ○ 위험,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및 부저(경보음) 필수<br>○ 방수방진등급 : IP55 이상<br>○ KC전파인증서 제출   |
| 흔들림 방지장치 (옵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출발·정지시 발생하는 관성 및 이동·정지 위치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진동(흔들림)을 제거<br>○ 옥외 설치시 방수방진등급 : IP55 이상  |

## 6.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



- (지원목적)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끼임·부딪힘·깔림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
- (품목설명) 무선, ICT,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 안전장치로서 다음을 말함
  - 전도예방장치 : 하역운반기계가 중량물 운반시 무게와 중심을 감지하여 전도 등을 예방하는 장치
  - 충돌방지장치 : 카메라·센서를 통해 하역운반차량이 주변 근로자와 충돌 위험을 경보장치로 알려 예방하는 장치
  -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: 무선장치 및 작업자가 착용한 태그(tag) 등을 통해 전동지게차 및 근로자가 접근하여 충돌위험이 있을 경우, 거리별로 서행 및 정지하는 장치
  - 부착형 충돌방지장치 : 중장비에 자석 등으로 모니터, 카메라, 경보기 등을 누구나 쉽게 부착하여 사람을 인식하고 접근 시 경보발생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| 1. (신청 시)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를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부착형 충돌방지장치는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를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도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가 상시로 사업장(현장)을 출입하고 작업 전후 탈부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(이 경우 사업장당 최대 5대)</li> <li>※ 단,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설치는 전동지게차만 가능</li> <li>※ 충돌방지장치(일반센서형)은 전도예방장치의 옵션으로 지원가능</li> </ul> 2. (신청 시) 안전장치를 부착하려는 지게차는 취득 및 등록에 따른 지자체 신고를 필한 설비에 한함.                     3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 |

○ (성능기준) 구분별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- ① 전도방지장치(옵션: 충돌방지장치 일반센서형)

| 구성                     | 최소 성능기준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로드센서                   | 1. 로드센서는 정격하중에 85% 이상 및 기울기가 위험 수준 시 경보가 작동할 것<br>2. 방수방진등급: IP55이상<br>3. KC전파인증서 제출   |
| 필수구성품 (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) | ■ 해당 구성(필수구성품)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<br>1. 모니터에는 지게차 정격하중, 화물운반무게, 안정도(기울기) 등을 표시<br>※ (옵션) 충돌방지장치 일반센서형 선택 시, 충돌방지 현황(위험 정보 등) 표시<br>2.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(로드센서, 모니터, 무선통신기, 충돌감지장치(옵션) 등) 간 연결될 것. (유선 연결은 지원 불가)<br>3. 경보장치는 작동 시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는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(작업 시, 정상작동을 유지할 것)<br>4. KC전파인증서 제출 |
| 충돌방지장치 (일반센서형)         | ■ 후방충돌 감지장치는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<br>1. 감지장치는 최소 1m이상 거리에서 근접하는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<br>2. 방수방진등급 : IP55 이상<br>3. KC전파인증서 제출  |

※ 필수 구성품(모니터, 경보장치, 무선통신기) 등 충돌방지장치(일반센서형)과 통합하여 설치 가능

- ② 충돌방지장치(카메라 센서형)

| 구분         |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소 성능기준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카메라<br>센서형 | 필수구성품<br>(모니터,<br>경보장치,<br>무선통신기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 구성(필수구성품)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</li> <li>1.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(실시간 영상,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) 표시되고, 충돌 위험 시 경보가 울릴 것</li> <li>2.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(모니터, 카메라, 감지장치, 무선통신기, 그 밖의 기타 장치 등) 간 연결될 것.</li> <li>3.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일 것(빗물, 분진 등의 유입이 되지 않는 운전석 내부에 설치되는 필수구성품은 미적용)</li> <li>4. 단, 지게차에 설치하는 경우, 별도의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3자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체충돌 등 위험상황 발생 또는 발생우려 시 경보음 및 알림(충돌방향·위치 표시)을 알 수 있을 것</li> <li>- 지게차와의 무선통신 반경은 최소 10m 이상일 것.</li> </ul> </li> <li>5.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/ul> |
|            | 카메라 및<br>감지장치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카메라 및 감지장치는 최소 4대 이상 설치</li> <li>2. 방수방진등급 : IP55 이상</li> <li>3. 감지장치로부터 최소 1m 거리의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</li> <li>4.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li>5. 카메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</li> </ul>   |

※ 필수 구성품(모니터, 경보장치, 무선통신기) 등 타 장비(전도예방장치 등)와 통합하여 설치 가능

- ③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

|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소 성능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필수구성품<br>(무선통신기,<br>제어장치,<br>경보장치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 구성(필수구성품)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</li> <li>1. 무선통신기(지게차등)는 작업자태그와 통신기 간 서로 접근시 거리별로 서행 및 정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서로 통신기(지게차 등)끼리 근접하여 멈췄을 경우, 충돌범위 외로 벗어날 수 있는 임시 해제기능이 있어야 함</li> </ul> </li> <li>2. 경보장치는 작동 시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는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(작업 시, 정상작동을 유지할 것)</li> <li>3. 방수방진등급: IP55 이상 (외부 노출장비만 적용)</li> <li>4.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/ul> |
| 작업자 태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방수방진등급: IP55 이상 (외부 노출장비만 적용)</li> <li>2. 작업자태그는 최소 24시간 이상 작동되고, 작업자가 임의로 off할 수 없을 것.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작업자가 불편이 없는 정도의 소형·경량일 것</li> </ul> </li> <li>3.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/ul>   |

- ④ 부착형 충돌방지장치

|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소 성능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카메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카메라 및 감지장치는 최소 4대 이상 설치</li> <li>2. 방수방진등급 : IP55 이상</li> <li>3. 감지장치로부터 최소 1m 거리의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</li> <li>4.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li>5.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</li> </ul>  |
| 필수구성품<br>(모니터,<br>경보장치,<br>무선통신기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 구성(필수구성품)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</li> <li>1.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(실시간 영상,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) 표시되고, 충돌위험 시 경보가 울릴 것</li> <li>2.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(모니터, 카메라, 감지장치, 무선통신기, 그 밖의 기타 장치 등) 간 연결될 것</li> <li>3. 경보장치는 작업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</li> <li>4.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/ul> |
| 부착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자석 등 그 밖에 방법으로 설비에 탈부착이 가능할 것</li> <li>2. 부착 후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일 것</li> </ul>  |

## 7.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



- (지원목적) 이동식 크레인에 “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 시스템” 을 설치하여 전도·떨어짐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
- (품목설명) 이동식 크레인에 센서 및 전도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전도를 예방하고, 무선통신을 통해 전도의 상태 및 위험 등을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이동식 크레인<br>통합전도방지<br>시스템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신청 시) 이동식 크레인을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</li> <li>2.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는 고용노동부고시 [안전검사 고시] 별표2(크레인 검사기준)를 따름.</li> <li>3.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.</li> <li>4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</li> </ol> |

○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성   | 최소 성능기준   |
|--|---|
| 이동식 크레인<br>안전장치 일체형<br>(컨트롤러, 모니터,<br>붐길이센서,<br>붐각도센서,<br>과부하방지장치,<br>권과방지스위치)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무선통신으로 별도 모니터링(스마트폰 등)이 가능하고, 위험상황을 시각 및 청각으로 알려줄 수 있을 것</li> <li>2. 모니터에는 하중, 작업반경, 붐높이, 위험상황 등이 표시될 것</li> <li>3. 붐길이센서 : 길이검출용 또는 신호전달용</li> <li>4. 컨트롤러: MICOM 사용 또는 동등 이상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신뢰성 확보</li> <li>5. 로드센서: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로드셀</li> <li>6. 과부하방지장치 : 안전인증품(KCs) 사용</li> <li>7.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/ol> |

## 8.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



○ (지원목적)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“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” 을 설치하여 깔림·끼임·전도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

○ (품목설명)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센서 및 전도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전도를 예방하고, 무선통신을 통해 전도의 상태 및 위험 등을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통합전도방지 시스템</p>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신청 시)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</li> <li>2.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는 <a href="#">고용노동부고시 [안전검사 고시]</a> 별표12[고소작업대 검사 기준]를 따름</li> <li>3.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.</li> <li>4. <a href="#">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</a></li> </ol> |

○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소 성능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일체형*</p>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무선통신으로 별도 모니터링(스마트폰 등)이 가능하고, 위험상황을 시각 및 청각으로 알려줄 수 있을 것</li> <li>2. 모니터에는 하중, 작업반경, 붐높이, 위험상황 등이 표시될 것</li> <li>3. 붐길이센서 : 길이검출용 또는 신호전달용</li> <li>4. 컨트롤러: MICOM 사용 또는 동등 이상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신뢰성 확보</li> <li>5. 로드센서: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로드셀</li> <li>6. 과부하방지장치 : 안전인증품(KCs) 사용</li> <li>7.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/ol> |

\* 컨트롤러, 모니터, 붐길이센서, 붐각도센서, 아웃트리거상태감지컨트롤러, 아웃트리거인출감지센서, 잭착지감지센서, 선회센서, 하중컨버터, 과부하방지장치

## 9.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



- (지원목적)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“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” 를 설치하여 전도·떨어짐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
- (품목설명)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센서 및 전도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전도를 예방하고, 무선통신을 통해 전도의 상태 및 위험 등을 스마트 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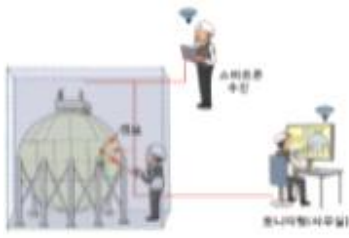
| 품목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b>이삿짐 운반용<br/>리프트<br/>통합전도방지시스템</b>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신청 시)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</li> <li>2.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방호장치는 고용노동부고시 [안전검사 고시] 별표3[리프트 검사 기준]을 따름</li> <li>3.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.</li> <li>4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</li> </ol> |

○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소 성능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b>이삿짐 운반용<br/>리프트<br/>안전장치 일체형*</b>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무선통신으로 별도 모니터링(스마트폰 등)이 가능하고, 위험상황을 시각 및 청각으로 알려줄 수 있을 것</li> <li>2. 모니터에는 하중, 작업반경, 붐높이, 위험상황 등이 표시될 것</li> <li>3. 붐길이센서 : 길이검출용 또는 신호전달용</li> <li>4. 컨트롤러: MICOM 사용 또는 동등 이상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신뢰성 확보</li> <li>5. 로드센서: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로드셀</li> <li>6. 과부하방지장치 : 안전인증품(KCs) 사용</li> <li>7.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/ol> |

\* 붐-아웃트리거연동장치, 아웃트리거 잭하중감지장치, 권과방지장치, 과부하방지장치, 비상정지장치, 붐과인출 방지장치

## 10-1.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(고정식)



- (지원목적)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 기반의 “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”을 설치하여 화재,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
- (품목설명) 인화성가스·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감지기, 수신반 등을 설치하여, 가스누출상황을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링·경보 할 수 있는 시스템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(고정식)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신청 시) 화재·폭발 위험장소 또는 위험공정을 보유한 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안기준에관한규칙 제243조(소화설비) 설치조건에 해당하는 장소</li> <li>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8조 [별표18]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경우, 질식·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센서를 추가(옵션)할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li>2.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·사용되는 방폭구조전기기구 등은 고용노동부고시 [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]에 따른 안전인증품(KCs) 사용 및 관련 서류(인증서 등) 제출</li> <li>3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</li> </ol> |

○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 분           | 최소 성능기준  |
|---------------|--|
| 수신반 (모니터링 설비)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화면에서 가스감지기 위치 및 감지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것</li> <li>2. 스마트폰 등을 통한 동시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근로자의 스마트폰 등으로 경보</li> <li>3. 확장 유닛(다채널)을 사용하여 추가되는 기능 및 수치 등이 화면에 표시될 것</li> <li>4. 긴급차단장치 및 HMI시스템 등 가스 확산 방지, 시스템 통제 기능을 위한 구성품 추가(옵션) 가능</li> <li>5. 방수방진등급: IP65 이상</li> <li>6. 향후 시스템 설치 완료 후, 시공 업체에서 반드시 성능시험을 실시할 것(결과서 확인)</li> <li>7.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/ol> |
| 가스감지기    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주전원이 차단되어도 30분 이상 연속적으로 가스의 감지와 경보기능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(감지기는 항시 가동)</li> <li>2.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/ol>   |
| 경보장치     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험,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및 부저(경보음) 필수</li> <li>2. 방수방진등급 : IP65 이상 ※ 수신반내 탑재가능</li> <li>3.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/ol>   |

※ 각 구성품(전기기구 및 부속품 등)을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 시 한국산업표준(KS) 등 기준에 따른 적합한 방폭전기기구 선정 및 사용(안전인증품(KCs)) 및 방폭구조

## 10-2.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(이동식)



- (지원목적)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 기반의 “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”을 설치하여 화재,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
- (품목설명) 인화성가스·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이동이 가능한 감지기, 수신반 등을 통해, 가스누출상황을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링·경보 할 수 있는 시스템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(이동식)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신청 시)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 시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설업 등록증* 보유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수행 업체</li> <li>*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1]의 전문건설업(①도장·습식·방수·석공사업, ②기계설비·가스공사업, ③가스·난방공사업, ④시설물유지관리업) 등록증</li> <li>- 인화성가스·액체* 등 취급·저장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 (단, 사업장 내에서 정비·보수 목적으로 사용에 한함)</li> <li>*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[별표1] 위험물질의 종류 제5항 인화성가스, 제6항 인화성액체</li> <li>※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인화성 액체 등 물질은 지원 불가</li> <li>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8조 [별표18]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경우, 질식·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센서를 추가(옵션)할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li>2.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·사용되는 방폭구조전기기구 등 안전인증품(KCs)은 인증서 등 관련서류 제출</li> <li>3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</li> </ol> |

-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 분           | 최소 성능기준   |
|---------------|---|
| 수신반 (모니터링 설비)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화면에서 가스감지기 위치 및 감지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것</li> <li>2. 스마트폰 등을 통한 동시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근로자의 스마트폰 등으로 경보</li> <li>3. 확장 유닛(다채널)을 사용하여 추가되는 기능 및 수치 등이 화면에 표시될 것</li> <li>4. 방수방진등급: IP65 이상</li> <li>5.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·사용되는 방폭구조전기기구 등은 고용노동부고시 [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]에 따른 안전인증품(KCs) 사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설업 등록증 보유 업체의 경우 설치·사용 조건에 관계없이 구성품 일체 방폭인증(KCs)을 받은 제품만 지원 가능하며,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</li> <li>- 인화성가스·액체 등 취급·저장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경우 신청 사업장 내 화재폭발위험이 상존하는 위험장소(공정)가 없으며, 해당 장소에서만 사용함을 사업주가 확인한 경우에만 비방폭형 지원 가능</li> <li>※ 성능확인서약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준수사항 기재</li> </ul> </li> <li>6.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/ol> |
| 경보장치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험,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및 부저(경보음) 필수</li> <li>○ 방수방진등급 : IP65 이상 ※ 수신반내 탑재가능</li> <li>○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/ul>   |

※ 각 구성품(전기기구 및 부속품 등)을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 시 한국산업표준(KS) 등 기준에 따른 적합한 방폭전기기구 선정 및 사용(안전인증품(KCs)) 및 방폭구조)

### 10-3.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(AI화재감지기)



- (지원목적)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, AI 기반의 “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”을 설치하여 극초기에 화재,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
- (품목설명) 인공지능(AI), Io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불꽃 등을 초기에 인지·반응하여 화재·폭발재해를 예방하는 장비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(AI화재감지기) | 1. (신청 시) 화재·폭발 위험장소 또는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(건설업은 본사를 통해 지원가능)<br>2. 디바이스와 무선통신이 연결된 스마트폰 등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어야 함<br>3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 |

○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소 성능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디바이스 (감지기, 컨트롤박스 또는 그밖에 부속품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 구성이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</li> <li>1. 최소 2개 이상의 다음과 같은 모드 및 기능을 보유하여야 하며, 15초 이내로 불꽃을 감지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람과 불꽃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경보 또는 조치가 되지 않고, 불꽃이 단독으로 발생·존재하는 경우에 경보 또는 조치</li> <li>- 사람의 존재 상관없이 불꽃이 발생·존재하면 경보 또는 조치</li> </ul> </li> <li>2. 무선으로 스마트폰 등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과 디바이스에서 경보음이 울릴 것(디바이스 경보음 단독 전원차단 불가)</li> <li>3. 작동의 이상 및 부품 교체 등을 상시 진단하는 자가 기능이 있어야하며, 사용자가 바로 인지 가능 (연결된 스마트 폰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가능)</li> <li>4. 전파 KC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</li> <li>5. 소방 KFI인증*을 받은 제품일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감지기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 또는 옥내외형 인증을 받아야하며, 반드시 방수형일 것</li> </ul> </li> <li>6. 방수방진등급 : IP65 이상(감지기만 해당)</li> <li>7. 인공지능(AI) 기능·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한국인정기구(KOLAS) 또는 국제인정협력체(ILAC, APLAC)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(소프트웨어 분야에 한함) 또는 인증서로 성능목표, 학습/테스트데이터, 사용 알고리즘, 사용 언어, 개발프레임워크 등 AI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</li> <li>※ 단, 지능형 CCTV인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에서 발행한 '지능형 CCTV 인증서' 제출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 |

### 10-4.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(AI계측장치)



- (지원목적)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, AI 기반의 “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”을 설치하여 화재,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
- (품목설명) AI카메라를 통해 아날로그(바늘, 막대, 숫자형 등) 계측기의 측정값을 변환하여 서버 및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장치

| 품목명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|
|----------------|---|
| <b>AI 계측장치</b>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신청 시) 계측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기계·기구 등 화학설비(배관 등 포함)* 및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<br/>                     *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7.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] 참조<br/>                     ※ 단, 계측장치 중 PT(Pressure Transmitter), TT(Temperature Transmitter), LT(Level Transmitter) 등 압력, 온도, 수위 등의 측정값 전달이 가능한 장치(Transmitter 등)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제외</li> <li>2. 카메라를 통한 계측장치의 측정값은 무선방식을 통해 원거리에 위치한 근로자의 스마트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(과거 측정기록 포함)하며 실시간 확인이 가능할 것</li> <li>3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</li> </ol> |

○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 성  | 최소 성능기준  |
|--|--|
| <b>통합제어장치</b><br>(AI영상처리장치, 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 및 모니터, 그 밖에 장치 등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 구성(통합제어장치)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</li> <li>○ 현장에 설치된 계측장치 종류에 따라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, 항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설치</li> <li>○ 인공지능(AI) 기능·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<br/>                     ※ 한국인정기구(KOLAS) 또는 국제인정협력체(ILAC, APLAC)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(소프트웨어 분야에 한함) 또는 인증서로 성능목표, 학습/테스트데이터, 사용 알고리즘, 사용 언어, 개발프레임워크 등 AI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</li> <li>○ KCs(방폭인증)제품<br/>                     ※ 방폭구역과 관계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, 제외(설치도면 등 설명 관련 서류 제출)</li> <li>○ 컴퓨터 등으로 무선연결을 통해 송수신의 장애가 없이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며,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을 것.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게이지가 정상범위를 벗어날 경우(고장, 파손 등 포함), 화면을 통한 경고 알림기능</li> <li>- 계측장치의 게이지 정상 작동범위를 설정가능</li> <li>-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알림(SMS 등) 기능 가능.</li> </ul> </li> <li>○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/ul> |
| <b>카메라</b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KCS(방폭인증)제품(관련 서류 동봉 및 사본 제출)</li> <li>○ IP 55 이상</li> <li>○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li>○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</li> </ul>  |

### 10-5.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(화학물질 누출방지형)



- (지원목적)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, AI 기반의 “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”을 설치하여 화재,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
- (품목설명) 검출대상물질(유해화학물질 등)과 일반 액체(빗물 등)을 선택적으로 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된 누액감지 센서 및 모니터링 시스템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(화학물질 누출방지형) | 1. (신청 시)급성독성물질, 관리대상 유해물질(금속류, 산·알칼리류, 가스상태 물질류), 유해화학물질 등 제조취급·저장 사업장 중 경보설비를 설치해야하는 설비 보유 사업장<br>2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 |

○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 성      | 최소 성능기준  |
|----------|--|
| 제어기 및 모듈 | 1. 누출 감지 시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<br>2. 물질 누출 감지 시 무선통신 연결방식을 통해 연결된 컴퓨터 또는 이동장치문자(SMS) 및 누출 경고 알림이 가능<br>3. KC전파인증서 제출<br>4. 전원 공급 차단 시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(UPS) 등을 통해 최소 30분 이상 유지할 것<br>5. 물질이 센서(필름)에 감지될 경우, 대상 물질만 구별하여 감지 및 경보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, 물질 접촉 시에도 성능에 이상이 없을 것<br>6. 누출 여부와 관계없이 센서 주변 상태를 감지 및 모니터링 |
| 커넥터 및 센서 | 1. 외부환경 또는 사업장 환경에 따라 적정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내구성 보유<br>2. 방수방진등급 : IP65 이상<br>※ 센서의 경우, 누출액이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방수등급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<br>3. KC전파인증서 제출   |

## 10-6.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(방폭 정전기 측정기: 옵션)



- (지원목적)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, AI 기반의 “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”을 설치하여 화재,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
- (품목설명) 인화성가스·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방폭안전인증을 받은 정전기 측정기를 통하여 안전하게 점검하고, 이를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 등과 연결하여 작업관리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스마트 방폭형 정전기 측정기 (옵션) | 1. (신청 시) “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”품목으로 지원받은 사업장 중 방폭 정전기 측정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<br>2. 무선통신 등으로 스마트 폰과 연결되어 작업자가 실시간으로 수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.<br>3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 |

○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 성          | 최소 성능기준   |
|--------------|---|
| 정전기 측정기 (본체) | 1.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·사용되는 방폭구조전기기구 등은 고용노동부고시 따른 안전인증품 (KCs, 내압방폭인증)일 것<br>2. 전파인증(KC) 제품<br>3. 정전기 측정범위 : -40kV~40kV<br>4. 무선통신 등으로 스마트 폰과 연결되어 작업자가 실시간으로 수치를 모니터링을 가능 할 것<br>- 무선통신이 가능한 거리는 최소 10m이상이어야 하며, 스마트 폰과 연결이 원활하고 수치 등<br>- 측정기 본체에 정전기 수치가 디스플레이 될 것.<br>5. 검교정을 받았다는 검교정서가 있어야 함. |

※ 각 구성품(전기기구 및 부속품 등)을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 시 한국산업표준(KS) 등 기준에 따른 적합한 방폭전기기구 선정 및 사용(안전인증품(KCs) 및 방폭구조)

## 10-7.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(스마트 피난유도설비)



- (지원목적)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정보통신, 센서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, 화재 발생 시 비상구가 있는 위치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하여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
- (품목설명) 정보통신, 센서기술 등을 활용하여 화재 발생 시 비상구가 있는 위치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하는 장치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(스마트 피난 유도설비) | 1. (신청 시) 화재·폭발 위험장소 또는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<br>2. 실거래금액(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)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(5건 이상, 최저가격)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 |

○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 성         | 최소 성능기준  |
|-------------|--|
| 스마트 피난 유도설비 | 1. 스마트 피난유도설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모두 보유하여야 함<br>- 화재 발생 시 연기, 열 등을 감지하여 레이저로 비상구 위치를 안내할 것<br>※ 감지기는 소방 KFI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<br>- 비상구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움직임 조절이 가능할 것<br>- 외부 신호(화재수신기, 경종 등) 연동하여 작동될 것<br>- 화재 발생 장소를 회피하여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일 것<br>2. 연기가 자욱한 화재 상황에서 레이저 가시성 등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제출<br>※ 한국인정기구(KOLAS) 또는 국제인정협력체(ILAC, APLAC)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<br>3.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 또는 전용 PC(모니터)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<br>4. KC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|

## 11.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



- (지원목적)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주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“이륜차 충돌보호용 에어백 조끼” 를 지원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전도·충돌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
- (품목설명) 이륜차 운전자가 충돌 등으로 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, 조끼와 이륜차에 연결된 고리가 풀리면서 에어백이 작동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| 1. (신청 시) 배달, 택배업, 음식업 등 관련 업종에 지원(표준산업분류: 49401~2, 561XX)<br>※ 최대 지원한도(수량)은 신청 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에 한해 지원<br>2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 |

○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성                     | 최소 성능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| 1.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증 받은 제품(CE 등)<br>2. 이륜차 운전자가 전도·충돌 등으로 운전석에서 이탈할 경우, 이륜차에 연결된 버클(고리)등이 풀리면서 에어백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|

## 12-1.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(전기안전)



○ (지원목적) 산업현장의 전기사용 시 정보통신,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기로 인한 화재·누전 등 다양한 재해를 예방

○ (품목설명) 사물인터넷(IoT), 정보통신기술(ICT)을 이용하여 전력사용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전력 이상\* 발생 시 알림 및 조치하여 전기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 장치

\* 전력 이상: 과부하, 누전, 이상주파수, 과전압, 전원꺼짐, 온도상승(화재) 등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전기안전<br>모니터링<br>시스템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신청 시) 전 업종 지원 가능(설치도면 제출)</li> <li>2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</li> </ol> |

○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 성                 | 최소 성능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전기안전<br>모니터링<br>시스템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과부하, 누전, 과전압, 이상 주파수, 전원차단 등 이상전력 감지해야 하며, 발생 시 알림*<br/>*문자발송, 스마트폰 어플알림, 내부 경보(알림) 등<br/>- 작업장 소음에도 위험 경고 등을 경보음을 통해 즉시 인지 할 것(경보음 off 불가)</li> <li>2. 원격으로 전력강제 제어가능, 대기전력 차단, 부하 조절(초과시 전원차단)</li> <li>3. 분전함 내에 설치하거나 별도의 케이스를 설치할 것</li> <li>4. 무선, 유선 중 1가지 이상으로 스마트폰 또는 전용PC(모니터)에 연결될 것</li> <li>5. KC(전파인증)제품을 받은 제품일 것</li> </ol> |

## 12-2.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(아크제거장치)



- (지원목적) 산업현장의 전기작업 시 정보통신,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로 아크 폭발 사고 등 사망사고를 예방
- (품목설명) 센서 등을 통해 수배전반에 발생하는 전기아크를 감지하여 순간적으로 제거하는 스마트 안전장치

| 대상설비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b>전기안전<br/>모니터링 시스템<br/>(아크제거장치)</b> | 1. (신청 시) 수배전반을 보유(소유)한 사업장<br>- 1식 기준,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, CPU관련장치, 유·무선장치, 기타 자재 등 지원 가능<br>2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  |
|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소성능기준   |
| <b>전기안전<br/>모니터링 시스템<br/>(아크제거장치)</b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배전반에서 아크발생시 4ms내(투입동작시간)작동하여 아크를 제거하고, 해당 기능이 10회 이상 가능할 것</li> <li>- KOLAS인증기관에서 KOEMA0931규격(아크제거기)에 따른 시험성적서(적정)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, 투입동작시간(4ms), 무부하개폐시험 등에서 아크제거 횟수가 10회* 이상일 것.(시험성적서 제출)<br/>                         * 동작횟수(관련기기)에 대해 3년간 무상A/S 가능할 것(그외 기기는 공고 기준을 따름)</li> <li>- 제3자 모니터링 기능 : 디스플레이는 일반컴퓨터 모니터 크기이며, 실시간 아크 발생의 현황과 아크발생 등 위험상황 발생시 시각 및 소리로 알릴 수 있어야 함.<br/>                         ※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, CPU관련장치, 유·무선장치, 기타 자재 등 지원 가능</li> <li>-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대상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</li> <li>-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/ul> |

### 12-3.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(이동식 누설전류통제장치)



- (지원목적) 건설현장에 정보통신,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, 누설 전류로 인한 감전, 화재 등 사망사고를 예방
- (품목설명) 신기술을 활용하여 누설전류를 감지 및 통제하고 동시에 경보 알람을 통해 누설전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장치

| 대상설비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<br>(이동식 누설전류통제장치) | 1. 건설업 본사에 지원<br>- 건설업 본사는 건설업 등록증 사본 및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도급·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제출<br>2. <b>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</b>  |
|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소성능기준   |
|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<br>(이동식 누설전류통제장치) | 1. 이동 가능한 형태로 제작된 것<br>2. 누설전류 발생 시 누설전류 값을 5mA 이하로 제한하고, 자체 경보 및 알람<br>- 자체 경보는 작업장 소음에도 즉시 인지될 것<br>- 알람은 문자 발송 또는 스마트폰 앱 알람 등<br>3.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 또는 전용 PC(모니터)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<br>4. KC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<br>5.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절연변압기 안전인증 대상*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<br>* 정격용량 5kVA 이하 |

### 13. 근력보조슈트



- (지원목적)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장기간 반복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자에 대해 근력운동을 보조할 수 있는 “**근력보조슈트**”를 지원하여 근골격계질환 **예방**에 기여
- (품목설명) 고정자세,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이 되는 작업을 인공골격·근육, 센서 및 동력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줄여 주는 슈트

| 품목명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 |
|--------|--|
| 근력보조슈트 | 1. (신청 시) 근골격계 부담작업(2호 ~11호)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해 지원<br>※ 단, 지원사업장 내 사용으로 한함(산안법 상 특수고용형태 택배원은 지원가능)<br>- 신청시 「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」 제출받을 것<br>※ 참조 : 공단 홈페이지-사업소개(산업보건)-근골격계질환예방<br>※ 최대 지원한도(수량)는 신청 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수에 한해 지원<br>2. 가격결정근거자료 제출<br>※ 수입면장(수입품) 또는 실거래 세금계산서(국내, 5건 이상, 최저가격)<br>3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 |

○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분     | 최소 성능기준   |
|--------|---|
| 근력보조슈트 | 1. CE 중 CoC*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<br>* Certificate of Conformity : 적합성 인증<br>※ 제품자체(전체) 안전성 및 품질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<br>2. 외골격, 철제프레임, 동력 및 센서, 인공(합성)근육 등으로 구성된 제품<br>(밴드, 섬유, 패드만으로 이루어진 슈트는 지원불가) |

## 14.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



- (지원목적)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적은 근력과 일정한 근력으로 보조할 수 있는 “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” 를 지원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기여
- (품목설명) 사람이 취급하기에 무겁고 다양한 중량물을 일정한 힘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장치

| 품목명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신청시) 근골격계 부담작업(6호~10호)에 해당되는 단위 작업장소에 한해 지원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시 「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」 제출받을 것</li> <li>※ 참조 : 공단 홈페이지-사업소개(산업보건)-근골격계질환예방</li> </ul> </li> <li>2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</li> </ol> |

○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분                | 최소 성능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|---|
|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량물 취급시, 센서 및 공압기술로 무게를 자동감지 및 제어하여, 작업자가 일정한 근력(부하)을 사용해야함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(사용자의 근력(부하) 유지·감소 기능 확인용도)</li> <li>※ 한국인정기구(KOLAS) 또는 국제인정협력체(ILAC, APLAC)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</li> </ul> </li> <li>2. 다관절 구조로 x,y,z 축, 전 방향(유선형 움직임포함)으로 자유롭게 움직임 가능</li> <li>3. 기계 동력만으로 중량물을 취급(예 : 리프트, 호이스트 등)하는 것이 아니어야함</li> <li>4. 취급중량은 최대100kg 이하이며,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함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예 : 앵커볼트로 고정 등</li> </ul> </li> <li>5. 취급중량물 무게(중량)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, 무게(중량)가 취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, 알람 등이 울려 사용자가 알 수 있어야 하며 정지하여야 함(알람은 off또는 소리를 줄일 수 없어야 함)</li> <li>6.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/ol> |

## 15-1.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(스마트 귀마개)



- (지원목적) 소음 발생 작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“스마트 귀마개” 를 지원하여 원활한 의사소통과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함.
- (품목설명) 전파 및 그 밖에 스마트 기술 등을 통해 소음을 제거 하는 귀마개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(스마트 귀마개) | 1. (신청 시) 소음작업(85dB이상)에서 단위 작업장소 기준으로 직전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따른 소음 노출 근로자의 200%(2배)에 한해 지원<br>2. 귀마개는 고용노동부고시 [보호구 안전인증고시]에 따른 안전인증품(KCs)일 것<br>3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 |

-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분      | 최소 성능기준  |
|---------|--|
| 스마트 귀마개 | 1. 안전인증품(KCs)일 것<br>2.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유해소음 차단이 가능할 것<br>3. 1회 충전시 16시간 이상 사용가능<br>※ 배터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KC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제출<br>4. KC전파인증서 제출 |

## 15-2.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(방진마스크)



- (지원목적) 분진 발생 작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방진마스크를 지원하여 원활한 호흡 및 효율적인 필터 사용과 직업병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함.
- (품목설명) 호흡과 연동된 센서를 통하여 공급 유량을 자동으로 조절이 가능한 전동식 방진마스크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(방진마스크)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신청 시) 신청일 기준 직전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따른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대상 근로자의 200%(2배)에 한해 지원</li> <li>2. 전동식 방진마스크는 안전인증품(KCs) 일 것</li> <li>3. 여과재(방진필터)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따라 특급/1급/2급을 사용할 것</li> <li>4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</li> </ol> |

○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 성        | 최소 성능기준   |
|------------|---|
| 방진마스크 (본체)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안전인증품(KCs)일 것</li> <li>2.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따라 적절한 방진마스크 등급 및 여과재(방진필터)를 선정할 것</li> <li>3.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/ol>  |
| 전동팬 (내부)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마스크 내부 압력 감지 및 적절한 공기의 양을 자동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</li> <li>2. 전원(배터리) 상태(잔량 확인 및 배터리 용량 부족 시 경고 기능)를 확인할 수 있을 것</li> <li>3. 배터리는 1회 완충 시, 최대 8시간 이상 사용 가능</li> </ol> <p>※ 배터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KC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제출</p> |

## 16.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



- (지원목적) 무선통신기술 및 그 밖의 신기술을 적용한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원하여 관리자 및 그 외 근로자들에게 알려,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예방 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여
- (품목설명) 무선통신(IoT)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통해 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밀폐 작업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질식·중독재해를 예방하는 장비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스마트<br>밀폐공간<br>질식재해<br>예방장비 | 1. (신청 시) 밀폐공간 작업장소*를 보유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(건설업은 본사에 한함)<br>*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618조, 별표 18에 포함되는 장소<br>- 다만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[별표1] 위험물질의 종류 제5항 인화성가스, 제6항 인화성액체 취급·저장 설비 보유 사업장에 지원불가<br>※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지원<br>2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 |

○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 성                    | 최소 성능기준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디바이스<br>(측정기,<br>옵션 등) | 1. 산소, CO, H2S 등의 농도 및 질식·중독 위험범위를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할 것(추가 센서 옵션 가능)<br>2. 센서 및 배터리 등 교체 또는 이상 등을 전원 작동시 진단하는 자가 기능이 있어야하며, 사용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<br>3. 스마트폰 등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과 디바이스에서 경보음이 울릴 것(디바이스는 경보음 off 불가)<br>4. 작업장 소음에서도 위험 경고 등을 청각적으로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<br>5. 스마트 폰 등과 무선방식으로 연결되고, 방해물로 인한 차폐상황에서도 최소 20m 이상 연결이 끊기지 않고 작동할 것<br>6. 배터리는 충전식인 경우에는 1회 충전시 16시간 이상 작동할 것<br>※ 배터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KC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제출<br>7. KC(전파인증)제품, 디바이스의 설치된 가스센서는 검교정 및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일 것(관련 서류 동봉 및 사본 제출)<br>8. 방수방진등급 : IP55이상<br>9. 현황 모니터링, 중계기(증폭기)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속품(옵션) 등은 지원가능 |

## 17-1.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(환기설비 통합 시스템)



○ (지원목적) 사물인터넷(IoT), 정보통신(ICT)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통해 유해물질을 통합관리하여 유해물질 노출 및 폭발 사고 등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.

○ (품목설명) 사물인터넷(IoT), 정보통신(ICT)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통해 유해물질의 사용량, 정보, 노출량 등 사용정보와 환기장치의 모니터링·통제 등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 |
|---|--|
| 유해물질<br>통합안전<br>관리시스템<br>(환기설비 통합<br>시스템)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신청 시) 작업환경측정을 시행 중인 사업장 중 화학공정 또는 실험·연구실을 보유한 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일 기준 직전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상 측정대상 공정에 화학공정 또는 연구·실험실 확인</li> </ul> </li> <li>2. (신청 시) 컨트롤 디바이스와 최소1개 이상의 설치 디바이스로 신청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옵션(측정센서 디바이스)는 설치 디바이스와 같이 신청가능(단독 지원불가)</li> </ul> </li> <li>3. 국소배기장치의 적정 제어풍속 및 구조 등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를 것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투자완료 시, 제어풍속 측정하여 확인(최저 풍량에서 측정)</li> </ul> </li> <li>4. 컨트롤 디바이스를 통해 각 별도 디바이스와 연계(기능·환경의 상태 확인 및 제어 등)가 가능해야 함.</li> <li>5. 전파관련 제품은 KC전파인증을 받아야하며, 유해물질 센서 관련 제품인 경우, 각 센서는 1년이내의 시험성적서 및 검교정을 받은 제품일 것.</li> <li>6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</li> </ol> |

### ■ 컨트롤 디바이스(필수)

| 구 성         | 최소 성능기준  |
|-------------|--|
| 컨트롤<br>디바이스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디스플레이(10인치 이상)와 인터페이스는 사업장 상태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보는데 선명하고 불편이 없어야하며, 디바이스는 사업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는 보호정도(IP, 방폭 등)와 재질을 갖추어야함</li> <li>2. 컨트롤 디바이스는 각 기기별로 전원상태, 연결상태, 위험 시 경고음, 고장 등 이상상태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현황 또는 정보 등을 볼 수 있어야 함.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약장 적용 시 : 시약현황(반출입 포함), 문열림상태, 필터 교체필요 알림(필터식인 경우)</li> <li>- 전체 또는 국소배기(정화) 적용 시: 풍량상태, 필터 교체 필요 알림(필터식인 경우), 유해물질 센서 측정 물질명, 센서 측정 물질의 노출정도</li> <li>- 흡후드 적용 시: 풍량상태, 필터 교체 필요 알림(필터식인 경우), 유해물질 센서 측정 물질명, 센서 측정 물질의 노출정도</li> </ul> </li> <li>3. 컨트롤 디바이스는 각 기기별로 전원제어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제어가 가능해야함.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약장 : 문잠금/열림</li> <li>- 전체 또는 국소배기(정화)장치, 흡후드 : 풍량</li> </ul> </li> <li>4. 일반 컴퓨터(클라우드, 프로그램 등)로 상기된 "컨트롤 디바이스"의 성능 및 기능이 가능한 경우, 유해물질 및 위험·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일반 사무실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대체가능</li> </ol> |

■ 설치 디바이스(1개 이상 필수)

| 구 성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소 성능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b>공통적용</b>            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디스플레이와 인터페이스는 사업장 상태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보는데 선명하고 불편이 없어야 하며, 디바이스는 사업장 환경 및 노출물질 등을 고려하여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는 보호정도(IP, 방폭 등)와 재질을 갖추어야 함</li> <li>2. 발생하는 유해물질 등을 정확하여 외부로 배기할 수 있어야 하며,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말아야 함 (시약장은 별도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배기덕트는 유해물질의 특성에 따라 내부식성, 내마모성, 내구성 등을 보유한 재질 또는 구조이어야 하며, 분진·흙·미스트 등이 퇴적할 수 없거나 청소 등이 용이한 구조여야 함</li> </ul> </li> <li>3. 국소배기장치, 흡후드의 경우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어풍속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유해인자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함</li> <li>- 최대 풍량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은 80dB이하 이어야 함.</li> </ul> </li> </ol> |
| <b>전체 또는 국소배기 (정화) 디바이스</b>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소배기(정화)장치가 우선 설치이나 작업 및 사업장 상태 등 고려하여 전체환기(정화)장치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, 작업환경측정 기관의 의견*을 받아 제출 시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작업환경측정 결과서의 개선의견 또는 별도의 확인의견서 등</li> </ul> </li> <li>2. 해당 공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중 사업장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물질의 센서로 물질 농도 등이 실시간 모니터링(숫자 또는 이미지·색상 등 표시 가능)이 가능하고, 위험시 경고 표시(경보음 포함)가 되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해물질 센서는 검교정 및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일 것(관련 서류 사본 제출)</li> </ul> </li> </ol>  |
| <b>시약장</b>             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시약 문은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 투명 재질로 하되, 물리 및 화학적으로 견고한 내구성을 갖출 것.</li> <li>2. 디스플레이에 필터 교체여부(필터식인 경우), 시약반출입, 시약현황, 문열림상태, 경고표시 등을 확인 또는 표시할 수 있어야 함.</li> <li>3. 문잠금/열림 등 시건장치가 설치 또는 기능이 있어야 함.</li> <li>4. 시약장의 내부의 공기 중의 체류하는 유해인자 등을 정확하여 외부로 배기할 수 있어야 하며,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말아야 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배기덕트는 유해물질의 특성에 따라 내부식성, 내마모성, 내구성 등을 보유한 재질 또는 구조이어야 하며, 분진·흙·미스트 등이 퇴적할 수 없거나 청소 등이 용이한 구조여야 함.</li> </ul> </li> </ol>  |
| <b>흡후드</b>             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물리 및 화학적으로 견고한 내구성을 갖출 것.</li> <li>2. 해당 공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중 사업장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물질의 센서로 물질 농도 등이 실시간 모니터링(숫자 또는 이미지·색상 등 표시 가능)이 가능하고, 위험시 경고 표시(경보음 포함)가 되어야 함</li> </ol>  |

■ 옵션 (단독지원 불가)

|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<b>측정센서 디바이스</b>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디바이스는 사업장 환경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데, 불편이 없고,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는 보호정도 (IP, 방폭 등)와 재질을 갖추어야함</li> <li>2. 기본 산소, CO 농도와 그 외 사업장 필요 유해물질 센서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, 각 유해가스의 농도 등이 실시간 모니터링(숫자 또는 이미지·색상 등 표시 가능)이 가능하고, 위험시 경고 표시(경보음 포함)가 되어야 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해물질 센서는 1년 이내 검교정 및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일 것(관련 서류 사본 제출)</li> </ul> </li> </ol> |
|------------------|---|

## 17-2.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(화학물질 노출정보 모니터링)



○ **(지원목적)**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화학물질 노출정보를 제공하는 “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”을 설치하여 화학물질 중독사고 등을 예방

○ **(품목설명)**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감지기로 화학물질 노출수준 통합관리 프로그램이 적용된 스마트폰(또는 웨어러블기기) 및 컴퓨터 등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상황을 경보하는 시스템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(화학물질 모니터링)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(신청 시) 아래의 유해물질* 취급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 18] 제1호나목제1호(급성 독성 물질),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12]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로 <b>MSDS를 통해 확인 가능한 물질</b></li> <li>* 2차 부산물의 경우 MSDS 대신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통해 발생하는 물질이 급성 독성 물질 또는 특별관리물질이고, 정량적인 결과가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</li> <li>- 신청일 기준 직전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상 취급공정 확인</li> </ul> </li> <li>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와 관리자가 감지기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정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(또는 웨어러블기기) 및 관제 컴퓨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</li> <li><b>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</b></li> </ol> |

○ **(성능기준)**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 성                       | 최소성능기준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감지기                  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것</li> <li>보조금 지급기준의 유해물질 중 사업장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측정 센서를 갖추고, 해당 센서에 대한 <b>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신청 시) 해당 센서 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있을 것</li> <li>- (설치 후) 현장에 설치된 센서에 대한 교정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성적서 제출(설치된 센서의 성능 및 정확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)</li> </ul> </li> <li>※ 상기 시험성적서 및 교정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(KOLAS) 또는 국제인정협력체(ILAC, APLAC)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이어야 하며, 교정성적서에 준하는 시험성적서의 경우 KOLAS의 화학분석 분야로 지정받은 교정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</li> <li>※ 보조금 지급기준의 유해물질 외 측정 센서를 추가하여 감지기 구성 가능</li> <li>화학물질의 노출정보 실시간 감지 및 설정값 이상시 경보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작업장 소음에서도 위험 경고 등을 청각적으로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</li> </ul> </li> <li>사용장소에 적합한 기기보호등급(IP등급, 방폭 등) 및 전파관련 제품은 KC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</li> </ol> |
| 중계기<br>(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장비)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및 컴퓨터 등에 정보제공 가능할 것</li> <li>사용장소에 적합한 기기보호등급(IP등급, 방폭 등) 및 전파관련 제품은 KC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</li> <li>(해당 시) 중계기 역할을 하는 웨어러블기기(스마트워치 등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기기가 중계기 역할을 하고, 근로자 위험상황 감지 및 경보를 위해 심박수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고, 업무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된 제품(MDM* 적용)이면 보조지원 가능</li> </ul> </li> <li>* MDM(Mobile Device Management): 원격으로 스마트폰, 태블릿 PC 등 모바일 단말기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</li> <li>※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웨어러블기기는 보조지원 불가하나 중계기로는 사용 가능</li> </ol>  |
| 화학물질 노출수준 통합관리 프로그램  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스마트폰(또는 웨어러블기기) 및 컴퓨터 화면에서 감지기 작동상태, 화학물질 농도, 이상상황 등에 대한 통합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·관리 가능하고 경보(알림) 기능이 있을 것</li> </ol>  |

## 18.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 시스템



- (지원목적) 작업 중 끼임·말뭉침 등으로 비상정지장치를 작동할 수 없는 경우 비명 등의 음성으로 기계·설비를 정지하고 위험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조치를 가능케 함으로써 상해 정도를 경감시켜 사망 사고 감축에 기여
- (품목설명) 기계설비 비상정지장치에 음성인식장치를 연결하여 근로자의 비명 및 음성에 따라 기계설비가 정지하고 경보하는 시스템

| 품목명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음성인식 비상정지<br>보조 시스템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신청 시) 비상정지장치가 있는 기계·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</li> <li>2. 설치 후 작업장 소음에도 정상 작동 확인 시 보조금 지급가능</li> <li>3. <b>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</b></li> </ol> |

○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소성능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디바이스<br>(음성인식장치,<br>통합관리 프로그램 등)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정한 언어* 인식을 통해 연동된 기계·설비를 신속하게 정지하고 경보하는 구조일 것<br/>* '악', '사람살려', '살려주세요', '도와주세요', 'Help me" 등</li> <li>2. 음성인식 성능과 관련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을 것<br/>※ 한국인정기구(KOLAS) 또는 국제인정협력체(ILAC, APLAC)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</li> <li>3. 설치 작업장별 소음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</li> <li>4. 비상 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등에 경보(알림) 기능이 있을 것</li> <li>5. KC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</li> </ol> |
| 경보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작업장 소음에도 경보는 시각 및 청각적으로 바로 인지가 가능할 것</li> <li>2. KC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</li> </ol>  |

## 19. 붕괴·변위 위험 경보시스템



- **(지원목적)** 건설현장에 정보통신, 센서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계, 동바리 등 가시설, 구조물 붕괴를 사전 감지 및 경보함으로써 사고 사망 감축에 기여
- **(품목설명)** 비계, 동바리 등 가시설의 변위 및 가속도 변화를 감지하여 붕괴 등 위험요인 발생 시 주변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경보하는 시스템

| 품목명 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 |
|----------------|--|
| 붕괴·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| 1. 건설업 본사에 지원<br>- 건설업 본사는 건설업 등록증 사본 및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공사도급(하도급)계약서 사본을 제출<br>2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 |

○ **(성능기준)**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 성            | 최소성능기준  |
|----------------|---|
| 붕괴·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| 1.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 등과 연결되어 실시간 변위량(값)을 확인 가능할 것<br>2. 허용 변위량 초과, 붕괴 위험 등 감지 시 스마트폰 등을 통한 경보 알림과 장치에서 경보음이 울릴 것(경보장치 내장 또는 외부 별도 구성 가능)<br>- 작업 소음에도 위험 경고음을 청각적으로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(경보음 off 불가)<br>3. 브라켓, 자석 등의 방법으로 가시설에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고 견고하게 고정될 것<br>4. 내장 배터리를 통해 최소 15일 이상 작동할 것<br>※ 배터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KC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제출<br>5. KC전파인증서 제출<br>6. 방수방진등급 : IP56 이상 |

## 20.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



- (지원목적) 근로자가 작업 또는 보행 중 개구부 덮개 열림 또는 개구부 존재 미인지로 인한 추락 사고예방을 위해 정보통신, 센서 기술을 활용하여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
- (품목설명) 근로자의 개구부 접근 또는 개구부 덮개 개방 여부를 감지하여 자체 경보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위험 정보 알람을 주는 시스템

| 대상설비명   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|
|-----------------|---|
|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바닥 개구부 덮개* 열림으로 인한 추락 위험장소 보유 사업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건설업 본사가 건설현장 내 탈·부착하면서 사용하려는 경우 또한 지원 가능</li> <li>* 바닥 개구부 덮개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면서 밟아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는 등 반드시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함<br/>(건설업 본사의 건설현장 자체 설치 사용 시에도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)</li> <li>- 감지장치는 사업장 내 설치 가능 위험장소 수만큼 지원 가능하며, 건설업 본사의 경우 최대 10개까지 지원 가능</li> <li>- 건설업 본사는 건설업 등록증 사본 및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공사도급(하도급)계약서 사본을 제출</li> </ul> </li> <li>2. 표준가격(기준가격)에 따라 결정(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</li> </ol> |

○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| 구 성             | 최소성능기준   |
|-----------------|--|
|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 등과 연결되어 개구부 덮개의 실시간 개폐 여부를 확인 가능할 것</li> <li>2. 개구부 덮개 열림 감지 시 스마트폰 등을 통한 경보 알림과 장치에서 경보음이 울릴 것(경보장치 내장 또는 외부 별도 구성 가능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구부 덮개 닫힘 시(감지 범위 원위치) 경보 알림 중지</li> <li>- 작업 소음에도 위험 경고음을 청각적으로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(경보음 off 불가)</li> </ul> </li> <li>3. 작업자의 개구부 접근 시 직접 또는 작업자 스마트폰 등으로 개구부 존재가 인지될 수 있도록 알람을 줄 것</li> <li>4. 브라켓, 자석 등의 방법으로 개구부 덮개 등에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고 견고하게 고정될 것</li> <li>5. 내장 배터리를 통해 최소 15일 이상 작동할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배터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KC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제출</li> </ul> </li> <li>6. KC전파인증서 제출</li> <li>7. 방수방진등급 : IP56 이상</li> </ol> |

## ■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

- (품목설명) 특정품목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안전 시설장비를 신청하는 품목
- (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) 충족 시 지원 가능하며, 아래에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, 확인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

| 품목명        | 보조금 지급기준   |
|------------|--|
| 자율신청<br>품목 | <p>○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·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</li> <li>- 인공지능·로봇공학·정보통신·사물인터넷·센서기술 중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</li> <li>- 상기 기술·스마트·신기술·혁신 관련 국가 및 정부기관의 인증·특허가 있는 제품<br/>예) 혁신제품,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, 신기술(NET 등)인증, 국내 특허증 등</li> <li>- 이동식크레인,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,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, 차량계 건설기계·하역운반기계 등에 부착하는 경우 관련 기계는 신청사업장 소유일 것</li> <li>- 산안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*에 부착하는 경우 관련 위험기계는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중일 것</li> </ul> <p>* 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, 리프트, 압력용기, 곤돌라, 국소배기장치, 원심기, 롤러기, 사출성형기, 고소작업대, 컨베이어, 산업용 로봇, 혼합기, 파쇄기 또는 분쇄기</p> <p>(참고) “자율신청품목”으로 지원불가 제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요 과다 등으로 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</li> <li>- 아래 사유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공단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보조지원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지원 불가</li> </u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제출 서류 및 신청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지원 타당성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</li> <li>2) 산업재해예방 목적보다 공정개선에 주목적이 있는 생산설비로 판단되는 경우<br/>예) 용접기, 굴착기, 지게차 등</li> <li>3) 위험제거·대체 등의 상황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</li> <li>4) 기존 제품을 단순 조합하여 구성한 경우</li> <li>5) 상용화되지 않거나 개발 중인 제품인 경우</li> <li>6) 지정품목에 해당하지만 지정품목 기준을 충족지 못하는 경우</li> <li>7) 국가 및 정부기관이 발행한 인증 또는 특허가 아닌 경우</li> <li>8) 법적 의무 인증 대상에 해당됨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</li> <li>9) 단순부품, 소프트웨어(어플, 프로그램) 단독, 임차 제품, 소모품, 스마트폰 등</li> <li>10) 그 외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등</li> </ol> <p>○ 실거래금액(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)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(5건 이상, 최저가격)(단일 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)</p> |

| 품목명                | 최소성능기준 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<b>자율신청<br/>품목</b> | <p>○ 대상제품이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성능이 있다면 해당하는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품 설치 또는 사용 장소가 비, 분진 등이 노출되는 곳으로 이로 인한 제품의 고장·성능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→ IP55이상 만족 또는 별도 케이스 설치 등 별도 조치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IP55이상 시험성적서(또는 인증서) 제출 또는 별도 조치 계획 제출</li> </ul> </li> <li>2. <b>인공지능(AI) 사용 제품</b> → 인공지능(AI) 기능·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는 제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한국인정기구(KOLAS) 또는 국제인정협력체(ILAC, APLAC)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(소프트웨어 분야에 한함) 또는 인증서로 성능 목표, 학습/테스트데이터, 사용 알고리즘, 사용 언어, 개발프레임워크 등 AI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</li> <li>※ 단, 지능형 CCTV인 경우 KISA에서 발행한 '지능형 CCTV 인증서' 제출 가능</li> </ul> </li> <li>3. <b>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</b> → KC전파인증을 취득한 제품</li> <li>4. <b>산안법에 따른 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품</b> → KCs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설치 시 또는 주요구조부 변경으로 인한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투자 완료시까지 인증서 제출</li> </ul> </li> <li>5. <b>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</b> → KC전기용품 안전인증, KC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취득한 제품</li> <li>6. <b>소방용품 시험(인증) 인증 대상 제품</b> → KFI인증 취득한 제품</li> <li>7. <b>힘을 보조하는 제품</b> → 근력(힘)을 유지 또는 감소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는 제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한국인정기구(KOLAS) 또는 국제인정협력체(ILAC, APLAC)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</li> </ul> </li> </ol> <p>6. <b>그 외 법적 의무 인증 해당될 경우</b> →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(인증서 제출)</p> |

| 유의사항   |
|--|
| <p>○ 신청 → 우선선정 → 투자계획확인 이후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결과 “적정” 시 지원가능</p> <p>※ 자율신청품목 신청 시 제출한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포함한 자료*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시 중요하게 활용됨</p> <p>* ‘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’, ‘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’ 등</p> <p>○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신청품목과 동일 모델(동일 구성)의 실거래 세금계산서(5건 이상)를 제출</p> <p>○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제품의 제조·수입·판매·사용 등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 인증/검사 등의 증명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</p> |